

가상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5. 05. 01. 최초제정

2025. 07. 01. 부분개정

2025. 08.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제35조의4에 따라 본 대학교에 두는 가상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상학과”란, 학칙 제35조의4에 따라 신학문·신기술·신산업 분야 새로운 인재의 신속한 양성 및 학칙 제5조에 따른 스쿨 내·스쿨 간 융·복합 전공 직무교육을 위해 두는 학과를 말한다.
2. “정규학과”란 학칙 제5조에 따라 본 대학교에 두는 학과, 학부 및 전공을 말한다.
3. “대표 교원”이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가상학과를 설치하기 위하여 대표로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
4. “주임 교수”란 가상학과에 참여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가상학과 개설 후 학과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 교원을 말한다.

제3조(현황관리) 본 대학교에 두는 가상학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상학과 개설·운영 현황표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설치) 가상학과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상학과·전공 등의 설치,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상학과의 정규 학과 설치 추천에 관한 사항
3. 가상학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상학과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간사위원은 교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07.01.>

③당연직 위원은 학과구조조정 관련 부서장 및 교육과정개발 관련 부서의 센터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07.01.>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가상학과

제7조(설치) ①가상학과를 설치하려는 대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상학과 설치 허가 신청서
2.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서(국내·외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가상학과 설치를 심의한다. 심의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점수 산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설치 기준의 충족 여부
2. [별표 2]에서 정한 인력 양성 분야와 서로 관련이 없을 것
3. 가상학과에 참여하는 정규 학과 구성의 적절성
4. 가상학과 설치에 대한 적정성
5. 가상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타 사항

③설치하려는 가상학과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 교원에게 기한을 정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가상학과 설치를 1차 심의한 결과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대표 교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과정 편성 내역서를 제출하여 교무위원회의 2차 심의를 요청한다.

⑤교무위원회는 가상학과 교육과정 편성 내역서를 심의 후 설치를 허가한다.

제8조(설치 취소 등) ①대표 교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학생 모집 시작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상학과 설치 취소 신청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5항에 따라 가상학과 설치를 허가하였더라도, 제9조제2항에 따라 학생을 모집한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학기 모집을 중지한다.

제9조(정원 및 선발) ①가상학과의 최소 정원은 10명으로 하고, 최대 정원은 가상학과 운영 계획서에서 요청한 정원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청 마감일 현재 제1학년 1학기를 등록, 이수 완료하거나 또는 이수 예정인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1. 신청 마감일이 속한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 예정인 학생
2. 졸업 유예 중인 학생

③국내·외 다른 대학교의 재학생은 국내·외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학점교류협약(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선발이 가능하다.

제10조(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편성) ①가상학과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편성 절차는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②가상학과의 전공 최소 이수학점은 복수전공의 경우 30학점 이상, 부전공의 경우 18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가상학과의 교과목은 전공 개설 유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편성하는 교과목은 참여하는 정규 학과에서 정한 개설 학년 및 학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⑤가상학과의 주임 교수는 소속 재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를 돕기 위하여 매 학기 수강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복수학위 등 수여) ①가상학과에 편성된 복수전공 교육과정 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복수학위를 수여한다.

②국내·외 다른 대학교와 융합하여 공동으로 설치한 가상학과의 경우, 국내·외 다른 대학교의 재학생에게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가상학과의 정규 학과 설치 추천 등) ①본 대학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상학과를 정규 학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규 학과 설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의 기본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가상학과로 운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최근 연속 3년 동안 가상학과 복수전공·부전공 이수 선발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3. 최근 연속 3년 동안 가상학과 복수전공·부전공 이수율이 80% 이상인 경우

제4장 관리 및 평가 등

제13조(운영 관리 및 지원) ①가상학과의 기본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교육환경 및 기타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학기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②제15조의 성과평가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③가상학과의 운영학기는 학칙 제12조에 따른 운영학기를 준용한다.

④가상학과에 참여하는 정규 학과의 장은 가상학과의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업 시간표 편성,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이용, 실험·실습 기자재 이용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가상학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 부서,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⑥이 규정 이외에 가상학과를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

전공)이수 규정」을 준용하되, 가상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주전공학과 교과목과 중복될 경우에는 가상학과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5.08.01.>

제14조(가상학과 폐지) ①가상학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본 운영기간 중이라도 가상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1. 학생 모집 결과 2년 연속 제9조제1항의 최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2. 기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가상학과 폐지를 신청한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경우, 가상학과에 기한을 정하여 학과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지 대상 여부를 정한다. 다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성과평가) ①가상학과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본 운영기간 중 2년차가 되는 학년도에 위원회를 통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성과평가는 제13조제1항의 기본 운영기간의 마지막 학기 완료 전까지 시행한다.

②가상학과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 지표, 점수 산정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운영변경 및 종료, 폐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가상학과는 이후부터 이수 예정자를 모집 및 선발할 수 없다.

②가상학과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더라도 그 전공을 이수중인 재학생이 수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그 운영기간은 4개 학기 이내로 한다.

③폐지된 가상학과를 이수중인 재학생이 제2항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운영기간 동안 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이수가 중단된 재학생이 폐지된 가상학과에서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정규 학과 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08.01.>

가상학과 설치 기준(제7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내용	비고																			
설치기준	1. 학생의 전공 이수 유형에 관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정하여 설치할 것 가.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개설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전임교원 참여 필수 나. 부전공만 개설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전임교원 참여 필수 ※ ‘가’, ‘나’ 목의 전공 개설과목을 소단위전공으로 구성할 수 있음 2. 다음 각 목의 경우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서로 융합하여 설치할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27 784 411 840">구분</th> <th data-bbox="411 784 604 840">대상</th> <th colspan="2" data-bbox="604 784 1273 840">필수조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7 840 411 949" rowspan="2">가목</td> <td data-bbox="411 840 604 949" rowspan="2">정규 학과(부)</td> <td data-bbox="604 840 874 887">• 2개 학과 참여</td> <td data-bbox="874 840 1273 887">• 각 학과별 전임교원 1인 이상</td> </tr> <tr> <td data-bbox="604 887 874 949">• 3개 이상 학과 참여</td> <td data-bbox="874 887 1273 949">• 2개 학과 전임교원 2인 이상</td> </tr> <tr> <td data-bbox="327 949 411 1061">나목</td> <td data-bbox="411 949 604 1061">교양교육원 및 모집중지 학과</td> <td colspan="2" data-bbox="604 949 1273 1061">• 서로 다른 전공의 전임교원 2인 이상 또는 • 서로 다른 전공의 전임교원 1인과 겸임교원 1인 이상</td> </tr> <tr> <td data-bbox="327 1061 411 1173">다목</td> <td data-bbox="411 1061 604 1173">국내·외 다른 대학교와 공동 참여</td> <td colspan="2" data-bbox="604 1061 1273 1173">• 우리대학 전임교원 1인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필수조건		가목	정규 학과(부)	• 2개 학과 참여	• 각 학과별 전임교원 1인 이상	• 3개 이상 학과 참여	• 2개 학과 전임교원 2인 이상	나목	교양교육원 및 모집중지 학과	• 서로 다른 전공의 전임교원 2인 이상 또는 • 서로 다른 전공의 전임교원 1인과 겸임교원 1인 이상		다목	국내·외 다른 대학교와 공동 참여	• 우리대학 전임교원 1인 이상		
	구분		대상	필수조건																	
	가목		정규 학과(부)	• 2개 학과 참여	• 각 학과별 전임교원 1인 이상																
				• 3개 이상 학과 참여	• 2개 학과 전임교원 2인 이상																
나목	교양교육원 및 모집중지 학과	• 서로 다른 전공의 전임교원 2인 이상 또는 • 서로 다른 전공의 전임교원 1인과 겸임교원 1인 이상																			
다목	국내·외 다른 대학교와 공동 참여	• 우리대학 전임교원 1인 이상																			
3. 설치하려는 가상학과의 학문 분야가 본 대학교에 설치된 정규 학과의 학문 분야와 서로 다를 것(가상학과에 참여하는 정규 학과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학문 분야의 일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정한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를 따름																					
4. 설치하려는 가상학과에 참여하는 전임교원이 다른 가상학과에 중복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																					
5. 가상학과에 정규 학과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학과의 장의 동의가 있을 것 6.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교육과정 편성 요건에 부합할 것																					

[별표 2]

가상학과로 설치할 수 없는 분야(제7조제2항제2호 관련)

관련 법령 및 근거	양성 분야(직종)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가.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분야	▸ 교사
나.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의사 ▸ 조산사 ▸ 치과 의사 ▸ 간호사 ▸ 한의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	▸ 임상병리사 ▸ 치과기공사 ▸ 방사선사 ▸ 치과위생사 ▸ 물리치료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작업치료사 ▸ 안경사
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약사 ▸ 한약사
마.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및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 수의사 ▸ 동물보건사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응급구조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	▸ 사회복지사
4.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 영양사
5. 학군협약학과	▸ 의무부사관 등

※ 해당 법률 및 부서에서 복수(부)전공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표 3]

가상학과의 교과목 편성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분	내용	비고
교과목 편성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전공 교과목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소 전공학점을 기준으로 1.5배 학점 수 이내에서 편성(다만, 최대 편성 학점 수는 전공 운영 방식과 교육 여건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음) 2. 교과목당 학점은 3학점 이내로 편성. 이 경우 실험·실습·실기 또는 현장실습 수업 교과목 편성 가능 3. 가상학과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융합형 교과목을 반드시 다음 각목과 같이 신규 개발하여 전공 교과목으로 편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복수전공 5과목 15학점 이상 나. 부전공 4과목 10학점 이상 4. 편성 교과목 중 제3호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복수전공, 부전공 개설

[별지 제1호 서식]

가상학과 개설·운영 현황표(제3조 관련)

가상학과명	정원	수여 학위	개설 유형	설치 분야	참여 학과, 학부(전공)	운영 시작일
				
				
				
				
				
				
				
				
				
				
개 학과					개 학과, 학부(전공)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07.01.>

가상학과 설치 허가 신청서(제7조 관련)

※ 음영 표시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 학년도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대표 교원	성명	소속 학과
	연락처	이메일

학과 (전공) 개요	학과명								
	전공명	국문명							
		영문명							
	전공 개설(이수) 유형 [] 복수전공과 부전공 개설 [] 복수전공으로 개설 [] 부전공만 개설								
	수여 학위	○○전문학사 ※ 복수전공만 가능	학문 분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대분류</td> <td></td> </tr> <tr> <td>중분류</td> <td></td> </tr> <tr> <td>소분류</td> <td></td> </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대정원	()명 ※ 최소정원 10명								

설치 분야 및 유형	설치 분야 [] 신산업 대응 [] 융·복합 교육 [] 기타(설명)		
	설치 유형 [] 이종학과 [] 유사학과 [] 동일학과 [] 국내·외 다른 대학교 학과와 공동		

설치 목적 및 필요성 등	목적			
	필요성			
	교육분야			

타 대학 설치 사례	대학명	전공형태 (융합전공)	전공명	교육분야	비고
		(융합전공)			

	(학과)				
진로 및 취업분야	진로분야	취업분야 (융합전공) (학과)	목표직종	설정근거(인력수요전망)	비고
이수 후 역량 및 자격	취득 역량 취득 자격증 (또는 이수증)				
이수 학생 확보 계획	정원	이수 학생 목표 수			
		1차년도	2차년도	계	
이수 학생 확보 방법					
교과목 현황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론 실습	편성근거
가상학과 기대효과					
참여 학과의 장 동의	참여대학	참여전공	학과의 장 (날인)		
			(날인)		

「가상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상학과를 설치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교원

(서명 또는 인)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서류

1.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서(국내·외 다른 대학과 운영하는 경우)

※ 음영 표시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참여 전임교원 명단						
번호	구분	대학명	학과·학부(전공)	전공	성 명	비고
1	대표교원					(내부)
2	참여교원					(내부)
3	참여교원					(외부)
4						
5						
6						
7						
8						
9						
10						
참여 전임교원 수						명

유의 사항

1. 수여 학위는 전공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우선 고려하십시오.
2. 국내·국외 다른 대학교의 학과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과의 협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여 학과 및 전임교원의 수가 서식에서 정한 수보다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설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수정 및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07.01.>

교육과정 편성 내역서(제7조 관련)

1 전공 개요

학과명									
전공명	(국문)								
	(영문)								
학생 전공 이수 방법	<input type="checkbox"/> 복수전공과 부전공 개설	수여 학위	○○전문학사 ※ 복수전공만 가능						
	<input type="checkbox"/> 복수전공으로 개설								
	<input type="checkbox"/> 부전공만 개설								
학문 분야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대분류</td> <td>중분류</td> <td>소분류</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치 분야	<input type="checkbox"/> 신산업 대응 <input type="checkbox"/> 학문 간 융합 <input type="checkbox"/> 기타(설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공 개요									

2 학과 인재양성 유형 및 교육목표

학과 인재양성 유형 (직업(군))			
한달빛 글로벌보건연합대학 교육목표			
	↑ ↓	↑ ↓	↑ ↓
학과 교육목표			

3 핵심 역량

핵심역량	전공역량 정의
문제해결역량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며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능력
의사소통역량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며 경청하고, 비언어적 요소와 매체를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며, 갈등 상황에서 조율과 설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
창의융합역량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분석 및 개선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여러 관점과 의견을 수용하고 조화시키는 능력
사회적 책임역량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다하고 팀원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문화와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춘 능력
변혁적 역량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팀을 이끌어 변화를 주도하고, 저항을 극복하며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능력

4 전공 모듈 및 트랙

모듈과 교과목 구성

A	트랙명	B		C		D	
A-1	교과목명 1	B-1		C-1		D-1	
A-2	교과목명 2	B-2		C-2		D-2	
A-3	교과목명 3	B-3		C-3		D-3	
E		F		G		H	
E-1		F-1		G-1		H-1	
E-2		F-2		G-2		H-2	
E-3		F-3		G-3		H-3	

트랙 이수 요건

트랙유형	트랙번호	트랙명	모듈번호	이수요건
전공트랙	I			
	II			
	III			

5 이수 요건

요건		총족기준			
(1) 성적		가상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1.75 이상 (단, 졸업 유보자 제외)			
(2) 학점 취득		전공 영역별 이수 학점 및 전공 최소 이수학점 이상 취득			
		학년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 최소 이수학점(계)
(3) 소정 요건	적용 요건	[] 졸업 논문	[] 실험실습보고서	[] 실기 발표	
		[] 졸업종합시험	[] 기타	[] 없음	
	시기				
	총족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07.01.>

가상학과 설치 취소 신청서(제8조 관련)

※ 음영 표시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 수 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소속 학과
	연락처	이메일
취소하는 전 공	국문명	
	영문명	
취소 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가상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상학과 설치 신청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 교원

(서명 또는 인)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서류	1.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약 해지 관련 서류(국내·외 다른 대학과 운영하는 경우)
-------	---

※ 음영 표시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참여 교원의 동의					
번호	구분	대학명	학과·학부(전공)	전공	성 명
1	대표교원				(서명)
2	참여교원				(서명)
3	참여교원				(서명)
4					(서명)
5					(서명)
6					(서명)
7					(서명)
8					(서명)
9					(서명)
10					(서명)